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수집·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근무기간에 비해 교육 이수 시한이 길어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6개월로 단축하고 최소 교육 시간을 명시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를 “전문교육”으로, “1년”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전문교육에 대한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 7시간 이상
2. 실무자 전문교육 : 14시간 이상

제19조의11의 제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제출하는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수집·제출하는 자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3조의5제2항”을 “영 제83조의6제1항제1호 및 제83조의9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일자”를 “일자, 휴·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입대상물의 보험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계약·변경·해지 현황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생략) ② <u>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u> <u><신설></u> ③ <u>제1항과 제2항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11(<u>중앙행정기관의 장이</u> 수집·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5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2. (생략)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전문교육</u> ----- ----- ----- 6개월 ----- ----- -----. ③ <u>전문교육에 대한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관리자 전문교육 : 7시간 이상</u> <u>2. 실무자 전문교육 : 14시간 이상</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제19조의11(<u>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u> 수집·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6제1항제1호 및 제83조의9제2항----- -----. 1. 2. (현행과 같음)

3. 가입대상시설의 허가·등록 · 신고·면허 또는 승인의 <u>일자</u> 4. (생략) <u><신설></u> 5. (생략)	3. ----- ----- <u>일자</u>, 휴·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u>자료</u> 4. (현행과 같음) 5. <u>가입대상물의 보험 보장항목</u> <u>및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내</u> <u>역, 보험 계약·변경·해지 현</u> <u>황</u> 6. (현행 제5호와 같음)
--	---